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9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박 정·문금주·유동수

김현정 • 안규백 • 강유정

어기구 · 송옥주 · 민병덕

김병기 · 김영환 · 소병훈

김남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 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 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 이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 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되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의무를 초과해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견

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u>지</u>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u>지</u>
<u>급</u>) ① ~ ④ (생 략)	<u>급 및 용도</u>)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
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급 제한) ①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	
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야 한다. 1. (생 략)

<신 설>

<u>2.</u>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①·② (생 략)
-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 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 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 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 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 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 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
용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경우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100분의 80</u>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 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 저임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④ ~ ①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